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35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2
2. 조문별 검토	14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	14
나.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안 제6조~제15조) ..	18
다. 제3장 기금의 설치 등(안 제16조~제17조)	23
라.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16조~제25조) ..	26
마. 제5장 보칙(안 제28조~제29조)	34
바. 부칙	36
※참고자료	3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9.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그런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 및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

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

조 및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22조).

카.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산업단지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5%, 고용의 47.9%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생산·수출·고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참고 2 생산·수출·고용현황).

그런데 국가산단 주변지역은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으로 지역주민과 생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참고 2 중대사고 발생현황)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 주변지역 환경에도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변지역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와 같은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안전, 환경, 재산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고, 현행 환경 관련 법률로는 노후 국가산단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문화·환경·의료·복지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정기적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산단 규제,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온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등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¹⁾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국가산단은 국가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제정안은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산단이 속한 주변지역은 일반산단, 농공단지가 속한 주변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득수준²⁾이 높아 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산단, 농공단지 주변지역 등과의 정책 지원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2021년말 기준)>

(단위: 십억원, 천명, 백만원)

지자체	지역내총생산	인구	1인당 GRDP	비고
여수	30,567	277	110.4	여수 국가산단
구미	26,427	413	64.1	구미 국가산단
울산	77,974	1,122	69.5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단
함안	3,973	63	63.5	일반산단(14개), 농공단지(10개)
논산	4,401	114	38.4	일반산단(3개), 농공단지(10개)
정읍	3,533	106	33.2	일반산단(4개), 농공단지(8개)

* 여수, 구미, 울산은 주요 국가산단(석유화학, 디지털산업)이 있는 지역이고, 함안, 논산, 정읍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공단지가 다수인 지역임

[표 1]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

구분	지역	국가산단명	관리기관	지정연도	구분	지역	국가산단명	관리기관	지정연도
1	서울, 인천	한국수출산업	산단공	1964	26	전북	군산2	산단공	1989
2	부산	명지녹산	산단공	1989	27		익산	산단공	1970
3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1977	28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공	2015
4	대구	대구국가	산단공	2009	29		새만금지구	새만금개발청	2019
5	인천	남동	산단공	1980	30	전남	여수	산단공	1974
6	광주	광주첨단과학	산단공	1990	31		대불국가	산단공	1988
7	광주, 전남	빛그린	산단공	2009	32		광양	산단공	1982
8	울산	울산·미포	산단공	1975	33		삼일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91
9		온산	산단공	1974	34		전주탄소소재	-	2019
10	세종	세종스마트		2023	35	경북	구미(1단지)	산단공	1969
11	경기	반월특수지역	산단공	1977	36		구미(2~4단지)	산단공	1977
12		과주탄현	산단공	1998	37		포항	산단공	1975
13	경기, 충남	아산국가	산단공	1979	38		포항블루밸리	산단공	2009
14	경기	동두천	산단공	2019	39		구미하이테크밸리	산단공	2009
15		과주출판	입주기업체협의회	1997	40		월성원전	(한수원)	1976
16	강원	북평국가	산단공	1975	41		영주첨단베어링	산단공	2023
17	충북	보은	-	1987	42	경남	안정	산단공	1974
18		오송생명과학	산단공	1997	43		창원	산단공	1974
19		충주바이오 헬스	산단공	2023	44		진해	산단공	1982
20	충남	석문	산단공	1991	45		밀양나노융합	산단공	2017
21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	산단공	2009	46		경남항공	산단공	2017
22		고정	(한국중부발전)	1978	47		지세포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74
23		대죽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97	48		옥포	-	1974
24		논산국방	산단공	2024	49		죽도	-	1974
					50	제주도	제주첨단과학기술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04
25	전북	군산	산단공	1987	51		제주첨단과학 기술2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16

주: 한 개 기업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관리기관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명을 괄호안 표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음으로, 기존 법령상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 환경상 영향 조사,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³⁾,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⁴⁾ 상 조치가 시행 중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할 경우 입주업체 및 행정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4)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략)

[표 2] 제정안 주요 내용 및 기존 법령상 유사 제도 비교

구분	제정안 주요내용	기존 법령상 제도
이주대책	(안 제12조) 산업부장관은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시설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유해화학물질 조사	(안 제19조) 환경부장관은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환경상 영향조사·주민 건강역학조사	(안 제21조) 환경부장관은 국가산단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환경보건법 제15조) 산업단지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오염 방지조치	(안 제25조) 산업부장관은 국가산단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조치 실시	(산업입지법 제2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내용에 환경오염방지지설 사업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제정안의 입법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광역시, 환경부, 법무부 등에서 타법상 의무와의 중복성, 국가산단 지원의 형평성,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부담 원칙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타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기관명	주요의견
	○ 환경법령상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책임부담 원칙에 위배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방지·복원·피해구제 비용

기관명	주요의견
한국 산업단지 공단 (’24.7.1.)	부담자를 피해를 발생시킨 오염원인자로 명확히 규정 - 노후 국가산단이라 하더라도 환경 피해에 대하여 그 방지노력 등을 수행할 주체는 원칙상 해당 오염을 발생시킨 입주기업체 등이라 할 수 있음 - 환경오염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마련 등 계획 수립과 비용집행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오염원 저감 노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 환경오염 피해구제 비용을 피해자인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발생 - 국가산단 공해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있음에도 그 복구와 방지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피해구제 비용을 보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 ○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법령상 의무와 중복여부 고려 필요 - 제정안에서는 중앙정부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역학조사, 자료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산단조성 시 주변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령상 제도와외의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부 (’24.7.2.)	○ 안 제18조 관련하여,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 관련, 주변지역등을 지정·고시하는 사항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수립기관(안 제6조)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주변지역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건강영향 관련하여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안 제19조 및 제20조 관련하여,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됨 - 화관법에 따른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22조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가산업단지 중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주변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임 - 현재와 같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에 따라 근로자의 역학조사는

기관명	주요의견
	고용부 소관사항임 ○ 안 제23조 관련하여, 현행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됨 - 화관법에 따른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환경부에서는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완료 시 조사 결과를 공개 (환경부 환경디지털도서관, library.me.go.kr)하고 있음 ○ 안 제29조 관련하여, 과태료는 안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법무부 (’24.7.5.)	○ 공무원 의제(안 제27조)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 입주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시 처벌(안 제28조) 규정은 일부 보완 필요 - 법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해 징역형을 삭제하거나, 유사입법례와 같이 주체를 “입주업체”가 아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한편, 입주업체가 예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기획재정부 (’24.7.22)	○ (기금 신설 요건)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 결여 - (제1호 요건 결여)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낮은 연계성 : 정부출연금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부출연금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문제 - (제3호 요건 결여)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 :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곤란, 입주업체 출연금 등 민간출연은 강제성이 없고 규모와 지속여부가 불투명(안정성 결여)하여 기금재원으로 부적절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5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에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안 제6조~제15조)에서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기금의 설치 등(안 제16조~제17조)에서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18조~제27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정기적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감시, 환경오염 방지 조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보칙(안 제28조~제29조)에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

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표 4] 제정안 목차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9조(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제10조(의료시설의 설치)
	제11조(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제12조(이주대책)
	제13조(매수청구)
	제14조(지역상생을 위한 노력)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3장 기금의 설치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	제18조(주변지역등 지정·고시)
	제19조(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제20조(입주업체의 자료 제출)
	제21조(환경상 영향조사)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제23조(주민의 알권리 보장)
	제24조(주민의 감시)
	제25조(환경오염 방지 조치)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7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보칙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

제1장(총칙)은 이 법의 목적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안 제1조),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하는 등 주변지역, 주변영향지역 등의 법률의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며(안 제2조),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국가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로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입주업체”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지역등”이라 한다)의 주민과 노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노후 국가산단’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을 말하고, ‘주변지역’은 노후 국가산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변영향지역’은 노후 국가산단으로 인해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외 지역을 말함.

[표 6] 주변지역 및 주변영향지역 관련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8조(주변지역등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후 국가산단이 있는 주변지역은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있는 주변지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⁵⁾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이 양호한 국가산단 주변지역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산업입지법」 제6조⁶⁾를 인용하여 국가산단을 정의

5)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21년 기준)>

(단위: 십억, 천명, 백만원)

지자체	지역내총생산	인구	1인당 GRDP	비고
여수	30,567	277	110.4	여수 국가산단
구미	26,427	413	64.1	구미 국가산단
울산	77,974	1,122	69.5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단
함안	3,973	63	63.5	일반산단(14개), 농공단지(10개)
논산	4,401	114	38.4	일반산단(3개), 농공단지(10개)
정읍	3,533	106	33.2	일반산단(4개), 농공단지(8개)

주 * 여수, 구미, 울산은 주요 국가산단(석유화학, 디지털산업)이 있는 지역이고, 함안, 논산, 정읍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공단지가 다수인 지역임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가목7)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을 주변지역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정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변지역등은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제3장)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시행(제2장)의 적용대상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지정 주체 또는 절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7)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안 제6조~제15조)

제2장(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은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임무와 입주업체의 지역상생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다음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3조).

마지막으로,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제15조).

[표 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문화·환경·의료·복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
2. 주변지역등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방법·대상·시행기간 등 지원사업

제정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시설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에 공공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주대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매수청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지역상생을 위한 노력) 입주업체는 지역상생을 위하여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입주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등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안 제10조),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2조),

국가산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⁸⁾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이 피해구제, 비용부담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복구와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데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⁹⁾, 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한국산업단지공단 의견

- 환경법령상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책임부담 원칙에 위배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방지·복원·피해구제 비용부담자를 피해를 발생시킨 오염원인자로 명확히 규정
 - 노후 국가산단이라 하더라도 환경 피해에 대하여 그 방지노력 등을 수행할 주체는 원칙상 해당 오염을 발생시킨 입주기업체 등이라 할 수 있음
 - 환경오염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마련 등 계획수립과 비용집행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오염원 저감 노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 환경오염 피해구제 비용을 피해자인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발생
 - 국가산단 공해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있음에도 그 복구와 방지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피해구제 비용을 보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

다음으로, 지역상생 노력 의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입주업체로 하여금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4조~제15조),

이를 통해 생산·수출·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거주자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이용이 확대되면,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취업난 해소 및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 거주자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는 입주업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산단 지역 외 소재한 업체와의 형평성, 기업의 경영권 제한 등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10)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와 배치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며, 입주기업체가 해당지역 업체에 대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우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해당지역 외에 위치한 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제3장 기금의 설치 등(안 제16조~제17조)

제3장(기금의 설치 등)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16조),

해당 기금을 국가·지자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구성하며, 이를 주변지역등의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7조).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3장 기금의 설치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주변지역등의 주민 건강지원 2. 의료시설의 설치 3. 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4. 그 밖에 주변지역등의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산업단지는 2000년대에 지정된 경우보다 그 전에 지정된 경우가 많아,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가 30개(전체 국가 산단 51개 중 58.8%)이고, 노후 국가산단에서 매년 24~26건 가량의 중대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참고 2), 시설 노후화로 주변지역의 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및 의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기금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런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정부출연금, 타 회계·기금 전입금 위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 재원조달 측면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우려됨.

참고로 기금신설시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¹¹⁾에 따라 동법 별표2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¹²⁾¹³⁾.

1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2)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6호, 2024.6.19.발의)

13) 관련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4.7.22)	□ (기금 신설 요건) 「국가재정법」 상 기금 신설 요건 결여 ○ (제1호 요건 결여)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낮은 연계성 - 정부출연금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부출연금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문제 ○ (제3호 요건 결여)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 -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곤란 - 입주업체 출연금 등 민간출연은 강제성이 없고 규모와 지속여부가 불투명(안정성 결여)하여 기금재원으로 부적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신설 요건이 결여되어 기금 신설 관련 부분 삭제 필요

라.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16조~제25조)

제4장(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은 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입주업체, 근로자, 주민 등 각 주체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환경부장관이 노후 국가산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으로 인해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음으로,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다음으로, 환경부장관이 노후 국가산단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 및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2조).

다음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 등의 결과,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 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5조).

끝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위탁기관 종사자의 수뢰죄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는 규정을 둠(안 제26조~제27조).

[표 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 제18조(주변지역등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및 석유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제정안

장에 출입하여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이와 관련한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입주업체의 자료 제출) 입주업체는 자신이 사용·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배출 물질의 성분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상 영향조사)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이하 “환경상 영향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이하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근로자 및 주민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주민의 알권리 보장)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주업체가 사용·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유통량·배출량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의 감시)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주민에게 노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오염 방지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진·방풍

제정안

등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먼저, 주변지역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으로 인해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주변지역등을 지정·고시하는 사항은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기관(안 제6조)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되 지정 시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하여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주민 건강역학조사, 자료공개 의무 등 안전관리 수단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결과 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표 10]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략)

그리고 제정안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주민의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제15조에 산업단지로서 인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¹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직업성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간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법과의 중복 여부 및 추가 입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산업부 및 환경부 의견

- (제17조, 제1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됨
 - 화관법에 따른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제20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03년부터 국가산업단지 중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주변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임
 - 현재와 같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에 따라 근로자의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
- (제21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됨
 - 화관법에 따른 유통량·취급량·배출량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완료 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 환경부 환경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을 통해 공개

[표 11] 「환경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문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생략)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마지막으로, 조문 체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제27조(별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조항을 제4장(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보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체계상 조문 위치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¹⁵⁾,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대상에 이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2] 산업집적법 상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관리권자	관리기관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관리권자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마. 제5장 보칙(안 제28조~제29조)

제5장(보칙)은 입주업체가 제20조(입주업체의 자료 제출)를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안 제28조),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표 1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장 보칙
제28조(벌칙) 입주업체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에 따라 자료조사·역학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주민 건강영향조사, 근로자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 우려 및 유사 위반행위 간 형벌 균형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4] 안 제28조와 타 법률의 위반행위 및 형량 비교

법률명	위반행위	형량
제정안	노후 국가 산단 입주업체 자료제출(유해화학 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배출 물질의 성분 및 배출량) 거부 및 허위제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관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관련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 15] 안 제29조와 타 법률의 위반행위 및 형량 비교

법률명	위반행위	형량
제정안	근로자 및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 거부, 방해, 기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 보건법	산업단지 등 건강영향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 조사거부, 방해, 거짓진술, 사실은폐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법	직업성 질환 관련 근로자 역학조사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제정안은 법인인 입주업체에 대해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체를 ‘입주업체’가 아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장의 제목을 내용에 맞추어 ‘벌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6]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시 벌칙 입법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u>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u>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부칙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입주업체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이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표 1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1

산업단지 현황

□ 전국 산업단지 현황('23년말 기준)

단지유형	단지수(개)	입주업체(개사)	고용(천명)	생산(천억원)	수출(억불)
국가	50 3.8%	63,946 51.5%	1,089 46.6%	6,919 54.8%	2,299 54.7%
일반	731 56.0%	49,116 39.6%	1,072 45.9%	5,017 39.7%	1,775 42.3%
도시첨단	44 3.4%	2,785 2.2%	24 1.0%	42 0.3%	6 0.1%
농공	481 36.8%	8,286 6.7%	152 6.5%	650 5.1%	120 2.9%
합계	1,306 100.0%	124,133 100.0%	2,337 100.0%	12,629 100.0%	4,200 100.0%

□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지표 변화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산업단지 수(개)	1,220	1,238	1,257	1,274	1,306
산단 지정면적(km ²)	1,427	1,431	1,447	1,429	1,450
입주 업체수(개사)	102,934	107,139	113,091	119,281	124,133
고용 인원(천명)	2,223	2,218	2,272	2,304	2,337
생산액(조원)	991	949	1,104	1,257	1,263
수출액(억불)	3,548	3,346	4,024	4,449	4,200

□ 전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비중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5%, 고용의 47.9%를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

(‘22년말 기준)

구분	생 산	수 출	고 용
전국 제조업	2,074조원	6,792억불	4,254천명
전국 산업단지	1,257조원	4,449억불	2,038천명
(전국 제조업 대비)	60.6%	65.5%	47.9%

참고 2

노후 국가산업단지 관련 현황

※ 이하 노후 국가산업단지는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국가 산업단지를 뜻함.

□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 현황(2022년말 기준)

구 분	생 산	수 출	고 용
전국 제조업	2,074조원	6,792억불	4,254천명
전국 산업단지	1,257조원	4,449억불	2,038천명
국가 산업단지	689조원	2,369억불	935천명
노후 국가산업단지	669조원	2,307억불	909천명

□ 산업단지 중대사고 발생 현황(산단공 관할 66개 산단 기준)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고건수(건)	26		26		25		26		24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1	20	21	10	24	21	22	46	16	6
재산피해(억원)	282		248		35.9		930.8		106.6	
국가산단 사고건수(건)	26		26		25		26		24	
국가산단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1	20	21	10	24	21	22	46	16	6
국가산단 재산피해(억원)	282		248		35.9		930.8		106.6	
노후 국가산단 사고건수(건)	26		25		24		25		24	
노후 국가산단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1	20	20	10	24	20	21	46	16	6
노후 국가산단 재산피해(억원)	282		248		26.9		930.8		106.6	